

2025. 7. 19.

입양재판 절차 개편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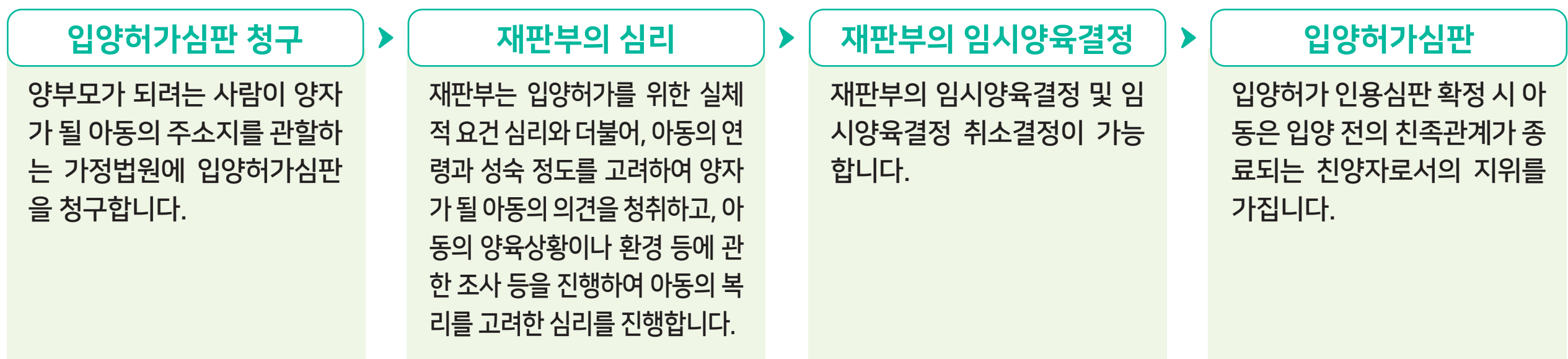
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허가재판 절차

✓ 적용대상 보호대상아동*의 국내입양

*보호대상아동: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,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✓ 입양허가재판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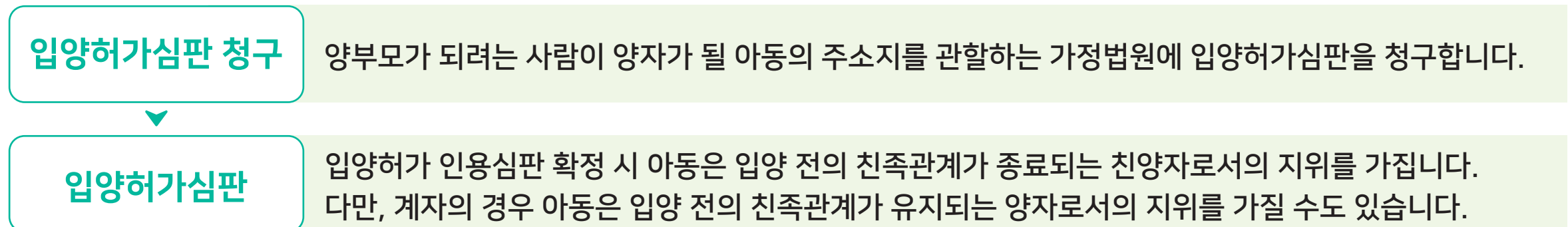


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양재판 절차

✓ 적용대상 보호대상아동, 18세 미만의 계자(배우자의 친생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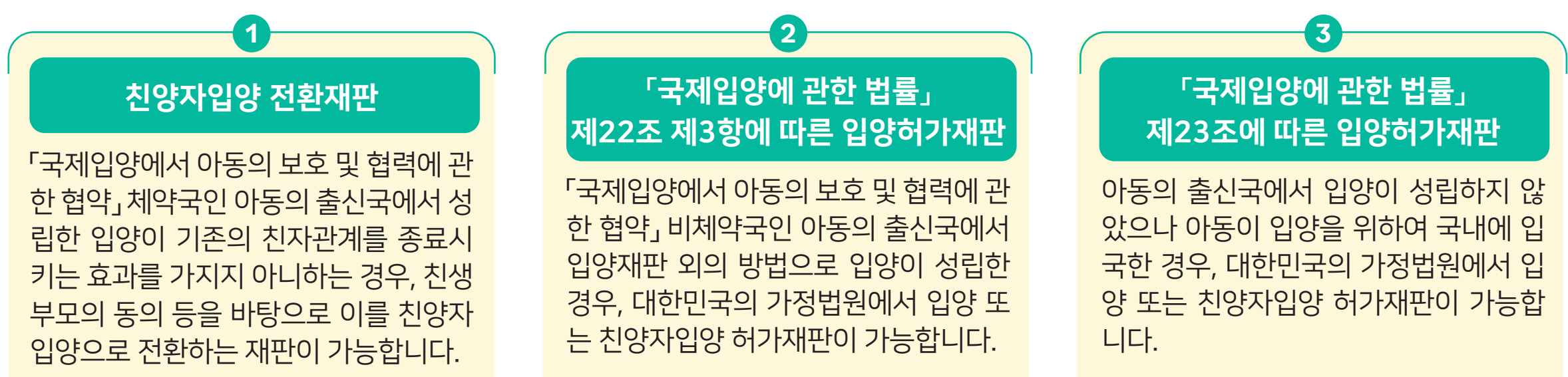
✓ 입양허가재판 절차

외국에서의 입양



✓ 적용대상 보호대상아동, 18세 미만의 아동

국내에서의 입양



법원행정처